

DB진주찾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 제1호 [주식] 규약변경대비표

(시행일:2022.3.3)

변경 전	변경 후
<p>투자신탁명 : <u>DB진주찾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 제1호 [주식]</u></p>	<p>투자신탁명 : <u>DB진주찾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 제1호 [주식]</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7.(생략)</p> <p><u>8.(신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7.(종전과 동일)</p> <p><u>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 (모집합투자 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u></p>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u>“DB진주찾기고배당증권 투자신탁 제1호 [주식]”</u>로 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5.(생략)</p> <p><u>6.(신설)</u></p> <p><u>④(신설)</u></p> <p><u>⑤(신설)</u></p>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u>“DB진주찾기고배당증권 투자신탁 제1호 [주식]”</u>로 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5.(종전과 동일)</p> <p><u>6. 모자형</u></p> <p><u>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DB진주찾기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 [주식]</u></p> <p><u>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 각호 이외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u></p>
<p>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u>주식</u>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u>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 신탁</u>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u>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u></p> <p><u>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u></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u>1. 제3조 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u></p> <p><u>2.(삭제)</u></p>

<p><u>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u></p> <p><u>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u></p> <p><u>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u></p> <p><u>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u></p> <p><u>6.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u></p> <p><u>7.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u></p> <p><u>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u></p> <p><u>9. 증권의 차입</u></p> <p>10. (생략)</p> <p>②(생략)</p>	<p><u>3.(삭제)</u></p> <p><u>4.(삭제)</u></p> <p><u>5.(삭제)</u></p> <p><u>6.(삭제)</u></p> <p><u>7.(삭제)</u></p> <p><u>8.(삭제)</u></p> <p><u>9.(삭제)</u></p> <p>10. (중전과 동일)</p> <p>②(중전과 동일)</p>
<p>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u>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u></p> <p><u>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u></p> <p><u>3.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u></p> <p><u>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u></p>	<p>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u>1.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u></p> <p><u>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3.(삭제)</u></p> <p><u>4.(삭제)</u></p>

<p><u>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u></p> <p><u>6.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하로 한다.</u></p> <p><u>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u></p> <p><u>8. 증권에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u></p> <p><u>9.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증권에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u></p>	<p><u>5.(삭제)</u></p> <p><u>6.(삭제)</u></p> <p><u>7.(삭제)</u></p> <p><u>8.(삭제)</u></p> <p><u>9.(삭제)</u></p>
<p>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u>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u></p> <p><u>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u></p> <p><u>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u></p>	<p>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중전과 동일)</p> <p><u>2. (삭제)</u></p>

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 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3. (삭제)

4.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삭제)

5.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삭제)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 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삭제)

7.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7. (삭제)

8.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8. (삭제)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하는 행위

<p>9.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p>9. (삭제)</p>
<p>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4.(생략)</p>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p> <p>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p> <p>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p> <p>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p> <p>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p>③ 제19조 제2호 본문, 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 가목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4.(종전과 동일)</p>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삭제)</p> <p>③(삭제)</p> <p>④(삭제)</p>
<p>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생략)</p> <p>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p> <p>③~⑤(생략)</p>	<p>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종전과 동일)</p> <p>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p> <p>③~⑤(종전과 동일)</p>
<p>제25조(판매가격) ①(생략)</p>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p>	<p>제25조(판매가격) ①(종전과 동일)</p>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p>

<p>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p>	<p>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p>
<p>(신설)</p>	<p>제25조의3(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26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③(생략)</p> <p>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 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③(종전과 동일)</p> <p>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 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28조(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p>	<p>제28조(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p>

<p>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p> <p>②~⑦(생략)</p>	<p>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p> <p>②~⑦(종전과 동일)</p>
<p>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p> <p>③(생략)</p>	<p>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p> <p>③(종전과 동일)</p>
<p>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p> <p>2.~3.(생략)</p> <p>②(생략)</p>	<p>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재무상태표</p> <p>2.~3.(종전과 동일)</p> <p>②(종전과 동일)</p>
<p>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생략)</p> <p>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생략)</p>	<p>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종전과 동일)</p> <p>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종전과 동일)</p>
<p>제37조(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p> <p>②~⑩(생략)</p> <p>⑪(신설)</p>	<p>제37조(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대하여 결의할 수 있다.</p> <p>②~⑩(종전과 동일)</p> <p>⑪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제39조(보수) ①(생략)</p> <p>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1.~3.(생략)</p> <p>③(생략)</p>	<p>제39조(보수) ①(중전과 동일)</p> <p>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1.~3.(중전과 동일)</p> <p>③ (중전과 동일)</p>
<p>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③(생략)</p> <p>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③(중전과 동일)</p> <p>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⑤(생략)</p> <p>⑥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5.(생략)</p> <p>⑦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7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⑧~⑨(생략)</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⑤(중전과 동일)</p> <p>⑥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5.(중전과 동일)</p> <p>⑦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7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⑧~⑨(중전과 동일)</p>